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봉양순 의원 외 24명
- 의안번호 : 제1706호
- 발의일자 : 2024년 4월 3일
-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2. 제 안 이 유

-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별하여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 중 생략되어 있는 '생태계', '소생태계',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생태계, 소생태계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9호 신설)
- 다.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 중인 주요 용어 정의를 추가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 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가 2022년 전부개정된 것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명이 변경된 것임.
-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내용이 주로 명시되어 있어, 「생물다양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40회 사용하고 있는 ‘생태계’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신설하여 정의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호 ‘소생태계’는 동 조례 제27조 생태도시의 조성방안에 명시된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 합치성을 높이고 있음.

안 제2조제9호는 동 조례 제26조에 명시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정의하는 것으로 생태축 복원, 외래생물 교란 복원, 훼손지 복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태계 복원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물다양성법 기본원칙 조항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湖沼)·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